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저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6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저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저
-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저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다.「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저
-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저

(1)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

민금융진흥원

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저

제26조의2제4항제3호 중 “시스템적 중요”를 “금융체계상 중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저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이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를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6호”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의2 중 “제26조제1항4호 및 제5호”를 “제2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의2제10항의 개정 규정 적용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
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저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
저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
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
는 경우

다.「농업협동조합법」 제161
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
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
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
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
여 제공하는 익스포저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
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
한 익스포저

(1)「보험업법」에 따
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서

민금융진흥원

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
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② ~ ⑤ (생략)

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1. 2. (생략)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 ⑨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2. (현행과 같음)

3. -----
----- 금융체계상 중요한 -----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3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⑩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저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이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
--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6호 -----

<p>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u>제26조제1항4호 및 제5호의</u>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u>9.제26조제1항제6호의</u> 규정은 <u>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 <u>제2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u></p> <p>-----.</p>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
-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
-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다.「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1)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
민금융진흥원

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제25조의2제4항제2호 중 “시스템적 중요”를 “금융체계상 중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u></p>

분의 20 이하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저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저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저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저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신 설>

② (생 략)

4.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